옥천군 공고 제2021-263호

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6일

옥 천 군 수

1. 조 례 명

○ 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「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」로 조례명 변경

○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2조)

○ 시행계획의 수립 등 (안 제4조)

○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(안 제5조 ~ 10조)

○ 여성폭력 예방교육 (안 제13조)

○ 사업비의 지원 (안 제15조)

4. 개정근거

○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5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복지정책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325, FAX : (043)731-1985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
○ 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

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
2.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
3.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・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4.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,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,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·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

가.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·단체

나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
다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
라. 경찰 및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

2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

2. 기관·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

3.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

4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례관리팀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.

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·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,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

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.

제12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・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여성폭력 예방교육) 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・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15조(사업비의 지원)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·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천군

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